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1. 제안이유

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0.12.31.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계약 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 추진하고자 함.

2. 추진근거

- 가.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
- 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- 다.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(2019.12.)

3. 업무 재위탁 내역

가. 시설개요

시설명	위 치	시설면적	종사자수	現위탁기간	수탁기관
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	시흥대로 123길11	432.67㎡	16명	3년 (2018.01.01. ~ 2020.12.31.)	새움병원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1) 재계약기간 : 2021. 1. 1. ~ 2023. 12. 31.(3년)
- 2)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재계약

3) 위탁업무

- 가)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적절한 관리를 통한 만성화 예방 및 회복촉진 도모
- 나)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
- 다)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
- 라)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
- 마)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상담, 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 운영
- 바)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지역주민, 가족에 대한 면담 또는 사례관리

4. 재위탁 추진의 필요성

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경험을 축적해온 기존 수탁업체의 운영 유지로 정신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5. 관계법령

- 가.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
- 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관계법령

▣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

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 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(이하 “보건소“라 한다)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(이하 “보호의무자“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.

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

⑦ 시·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시·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⑧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<신설 2019. 4. 23.>

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 4. 23.>

▣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

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